| 의안 번호 | 504 |
|---|---|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5.

전문위원 강 영 숙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소형준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50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8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8. 27.

## 2. 제안이유

○ 자살은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, 동료 등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남기는 사회적 문제임. 이에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자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, 동료 등 지인들까지를 포함시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제2조에 “자살유족 등”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호)

나. 지원 대상을 “자살유족 등”으로 확대 함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　간 : 2025. 08. 26. ~ 2025. 08. 30.

○ 의　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○ 본 개정안은 자살로 인해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, 동료 등 주변 지인들까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리부검[1] 분석(2015~2023)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98.9%가 사별 후 우울(20.0%), 불면(33.1%), 복합비탄(37.8%), 자살사고(56.3%)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, 자살 1건당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의 유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어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**< 최근 9년간(2015~2023)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>**

**【자살 유족 분석 결과】**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**유족의 98.9%는 사별 후** 심리/행동(97.6%), 대인관계(62.9%), 신체건강(56.5%), 가족관계(52.2%) 등의 **변화를 경험**하였고, **심한 우울(20.0%), 임상적 불면증(중한 수준과 심한 수준)(33.1%), 복합비탄(37.8%), 자살사고(思考, 56.3%)**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유족의 72.7%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,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.

**출처 : 2024. 8.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**

○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"자살유족"을 가족·친지뿐만 아니라 친구·동료·지인 등 자살로 심리적·신체적·사회적 영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.

---

1) **심리부검이란?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**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·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. 분석 대상은 유족 1,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,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임

## □ 주요내용

### ○ 안 제2조(정의), 4호 신설

4호를 신설하여 “자살유족 등”을 정의하고, 단서로 조례 제15조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하여 실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.

### ○ 안 제15조(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) 제목 및 제1항 정비

현행 제목과 제1항 내용에 있는 “자살자 유가족”을 “자살유족”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자살자 유가족을 포함 친척·친구·동료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정의)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4. “자살유족 등”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·친구·동료 등을 말하며, 이 조례 제15조에서만 적용된다. |
| 제15조(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)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 | 제15조(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) ① ---------- 자살유족 -----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## □ 종합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자살 유족의 범위를 가족·친지뿐만 아니라 친구·동료·지인 등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확대 개념으로 규정하여, 상위법의 “자살자의 유족”보다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함.

○ 또한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제2항[2]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, 위기 대응, 사후 대응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자살자 및 유족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으며, 향후 본 개정안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살 예방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| 구분 | 자살자 유가족 등 | 자살유족 등 |
|---|---|---|
| 근거 |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| 일부 지자체 조례(서울시, 경기도 등) |
| 범위 | 가족·친지 중심(협의) | 가족·친지 + 친구·동료·지인 등(확대) |
| 특징 | 법률적·협의 개념 | 사회적 필요 반영, 확장 개념 |
| 종합 | 통상적으로 배우자, 부모, 자녀, 친족 등 법률상 가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됨. 따라서 “자살자 유가족 등” 이라고 표현할 경우, 법률상 가족 범주에 집중된 협의 개념이 됨. | 자살자의 유족 + 친척, 친구, 동료 등 자살 사건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지인까지 포함하는 확대 개념. 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정의(“자살로 인해 심리적·신체적·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”)와도 일치함. |

2) **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 참고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률 통계

### ❑ 성북구 사업

| 사업명 | 분야 | 내용 |
|---|---|---|
|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| 자체 | -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, 사례관리<br>-지역주민참여 마음돌보미사업<br>-주체: 성북구자살예방센터<br>-예산: 429,145('25) |
|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| 보조 | -생명지킴이 및 준사례관리자 교육 및 양성<br>-자살예방을 위한 '생명이음청진기'사업 운영<br>-자살 수단접근성 차단을 위한 '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'운영<br>-생명존중안심마을 구성<br>-주체: 보건소<br>-예산: 107,840('25) |
| 지역자살예방 및<br>정신건강증진사업 | 보조 | -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<br>-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<br>-주체: 성북구, 정신건강북지센터와 연계 사업으로 추진<br>-예산: 21,000('25) |
| 자살 유족 지원사업 | 보조 | -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<br>-주체: 성북구자살예방센터<br>-예산: 52,756('25) |

### ❑ 성북구 자살률 및 5년간 자살 추이

* 전년도 대비 (단위 : 자살자 수=명, 자살률=인구 10만 명당 명)

| 구분 |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국 | 자살자 수 | 13,799 | 13,195 | 13,352 | 12,906 | 13,918 |
| | 자살률 | 26.9 | 25.7 | 26 | 25.2 | 27.3 |
| 성북구 | 자살자 수 | 111 | 90 | 105 | 78 | 95 |
| | 자살률 | 25.7 | 20.8 | 24.5 | 18.3 | 22.3 |

[출처 : 통계청, 2019-2023년 사망원인통계(2024.12.)]

## ❑ 서울시 자치구 자살 현황

| 자치구별 | 2023년도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자살 사망자수 (명) | | | 자살률 (10만명당 명) | | |
| | 계 | | | 계 | | |
| | 소계 | 남자 | 여자 | 소계 | 남자 | 여자 |
| 소계 | 2,163 | 1,411 | 752 | 23.2 | 31.2 | 15.6 |
| 종로구 | 34 | 20 | 14 | 24.5 | 29.9 | 19.5 |
| 중구 | 35 | 25 | 10 | 29.4 | 43.3 | 16.3 |
| 용산구 | 46 | 29 | 17 | 21.7 | 28.4 | 15.4 |
| 성동구 | 64 | 44 | 20 | 23.1 | 32.7 | 14.0 |
| 광진구 | 91 | 64 | 27 | 27.2 | 39.8 | 15.6 |
| 동대문구 | 84 | 62 | 22 | 25.0 | 37.5 | 12.8 |
| 중랑구 | 104 | 69 | 35 | 27.3 | 36.9 | 18.0 |
| 성북구 | 95 | 58 | 37 | 22.3 | 28.4 | 16.7 |
| 강북구 | 72 | 46 | 26 | 24.9 | 32.9 | 17.5 |
| 도봉구 | 85 | 58 | 27 | 27.7 | 38.9 | 17.1 |
| 노원구 | 120 | 73 | 47 | 24.1 | 30.5 | 18.1 |
| 은평구 | 107 | 72 | 35 | 23.1 | 32.6 | 14.4 |
| 서대문구 | 67 | 43 | 24 | 22.1 | 29.8 | 15.1 |
| 마포구 | 78 | 40 | 38 | 21.6 | 23.7 | 19.8 |
| 양천구 | 97 | 63 | 34 | 22.3 | 29.6 | 15.2 |
| 강서구 | 119 | 70 | 49 | 21.1 | 25.9 | 16.7 |
| 구로구 | 86 | 59 | 27 | 21.9 | 30.7 | 13.5 |
| 금천구 | 62 | 49 | 13 | 27.3 | 42.9 | 11.5 |
| 영등포구 | 68 | 50 | 18 | 18.3 | 27.4 | 9.5 |
| 동작구 | 74 | 49 | 25 | 19.6 | 26.9 | 12.8 |
| 관악구 | 141 | 95 | 46 | 29.3 | 39.3 | 19.2 |
| 서초구 | 67 | 48 | 19 | 16.7 | 25.1 | 9.0 |
| 강남구 | 128 | 69 | 59 | 24.2 | 27.2 | 21.3 |
| 송파구 | 124 | 77 | 47 | 19.0 | 24.6 | 13.9 |
| 강동구 | 115 | 79 | 36 | 25.2 | 35.4 | 15.4 |